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5년 03월 16일

개정: 2005년 07월 23일

개정: 2006년 03월 01일

개정: 2012년 06월 01일

개정: 2024년 08월 12일

제1조 (목적)

본 이사회 운영규정("본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그 구분 및 업무 범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② 비상임이사 중 일부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은 독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각 이사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 및 소집사유를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의 생략에 관한 동의는 전화, 이메일 기타 적절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6조 (의사 및 결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회는 소집통지시에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으나, 결의할 수 없다.
- ③ 결의사항에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 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그에 관

한 의견진술은 할 수 있으나 심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 ④ 이사회는 결의사항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과 관련한 이사들간의 모든 논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이사를 참조로 하는 이메일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i) 특히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ii) 이메일에 의한 논의가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는 없고, (iii) 이메일을 통한 의견의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해당 이사의 업무집행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과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다만, 일상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 심의, 결의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정적인 열거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해산, 영업양수도 및 합병, 타회사의 인수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다. 이사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라. 회사 내부 조직의 주요한 변경

3.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손익목표 및 성과평가

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승인

다.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과 자본금

라.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의 발행, 상환

- 마. 중요한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바. 중요한 차입 및 지급보증
- 사. 중요한 자금 대여

4.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 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제8조 (보고사항)

① 대표이사 및 관련 상임이사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다음 사업년도 개시 1월 이내)
2. 이전 분기의 영업성과, 업무집행 결과 및 평가(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3. 이전 분기의 연구개발결과 및 다음분기의 연구개발계획(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4. 다음 분기의 영업계획 및 전망(이전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5. 당해 년도의 결산 및 업무 평가(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
6. 기타 중요한 현안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의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 ① 대표이사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지명된 경우에, 당해 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이사와 견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i) 재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이사와 견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거쳐야 하며, (ii)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문제된 사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및 각 이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 ② 각 이사회에서는 직전 이사회 의사록을 회람하여 모든 이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지원)

- ① 이사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두거나 특정한 조직(“이사회지원조직”)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② 이사회지원조직은 이사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사회회의 안건, 경과요령 등을 정리하여 메일로 모든 이사에 회람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이사 및 이사회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에 배석한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그 진행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공지의 사실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2.06.01)

이 규정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8.12)

이 규정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